

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및 조회안내

1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
- 가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나. 만 19세 이상 자녀(형제,자매, 배우자,자녀 등 이하 자료제공자)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해당 서비스에서 「자료제공동의신청」을 하여야 자료조회자(근로 소득자)가 자료제공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☞ 주민등록표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본인인증(인증서,휴대폰)방법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, 그 외의 경우는 팩스,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
- 다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음 (2019년 1월 15일부터)
- 라. 기타 자세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문의는 ☎ 국번없이 126(+1), 126+1+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2. 포탈>정보생활>인터넷제증명시스템 서비스

- 가. 그 외에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탈시스템(<http://portal.korea.ac.kr>)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출력하여야 합니다. (포탈시스템>정보생활>인터넷제증명>증명서신청>교육비 납입증명서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본인이 포탈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또는 One-stop서비스센터 앞에 마련된 무인자동발급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
※ 교육비납입금액은 [입학금+수업료]에서 **장학금(근로장학금 포함)**과 **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금액**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 (세법개정)

-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금액은 교육비공제에서 제외됩니다(복지장학금 예외).

※ 장학금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음수(-)이므로 공제받을 교육비가 없습니다.

※ 본인의 장학금 수혜내역은 “포탈시스템>등록/장학>장학금(융자)수혜내역조회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2019년 1월 7일 이후 장학금(근로장학금 포함)을 수혜한 학생은 본인이 포탈 인터넷제증명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.

※ 최고위과정생의 경우, 각 대학원행정실을 통해서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
☞ 2019학년도 신·편입생 교육비는 2019년 3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. (2019년 귀속분)

3. 기타사항

- 가. 방문학생은 Global Services Center에서 발급하오니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Inbound(국외→국내) 학생의 경우, Global Services Center(02-3290-5151, 중앙광장)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Outbound(국내→국외) 학생의 경우, 해외 방문 대학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- 나. 평생교육원, 국제하계대학 등의 수강료는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법령에 근거한 해당 교육비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.